

#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

의안 번호	제54호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
제 출 자 : 예산군수

## 제안이유

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 (안 제2조)
  - 인감업무담당자 및 직무대리자
-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, 기간, 재정보증 한도액. (안 제4조, 제5조)
  - 재정보증 설정 :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
  - 재정보증 방법 : 보증보험 또는 공제
  - 재정보증 기간 : 1년(매년 갱신)
  - 재정보증 한도액 : 1억원 이상
-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(안 제6조)
-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(안 제7조)
  -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세입금으로 징수
  -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 변상

##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인감증명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7867호, 2002.12.31)
  -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표준안(충청남도행정13210-219,2003.01.28)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인감관계 공무원)**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인감업무담당공무원
2.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

**제3조(재정보증 관리책임자)**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.

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, 갱신, 관계 서류 보관,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재정보증)** ①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(이하 “보증보험”이라 한다.)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,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재정보증 한도액)**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
**제6조(보험료의 지급)**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** ①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** ①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·피보증인·보험금액·보험료·보험기간·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